

---

# 2024년 해외지사화사업 매뉴얼

---

2024

# 목 차

I. 해외지사화사업 개요 .....	1
II. 사업 추진절차 .....	2
III. 사업 참여자별 주요내용[참여기업] .....	8
IV. 사업 참여자별 주요내용[민간네트워크] .....	10
<b>[붙임] 참고자료 및 서식 .....</b>	<b>16</b>
참고 1. 단계별 지원가능 서비스 .....	17
참고 2. 단계별 서비스 금액 .....	18
서식 1. 컨설팅 계약서 .....	20
서식 2. 컨설팅 추진 진도표 .....	28
서식 3. 투입인력 현황 .....	30
서식 4. 컨설팅계약 체결 보고서 .....	31
서식 5. 보조금 약정서 .....	32
서식 6. 보조금 신청서 .....	33
서식 7. [기업/개인]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	34
서식 8. 중도해지 검토 요청서 .....	41
서식 9. 보고서 양식 .....	42
서식10. 보고서 검수표 양식 .....	56
서식11. 보고서 평가표 양식 .....	57

# I. 해외지사화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현지진출 지원
  - 3개 기관의 유사사업을 통합('17년)하여 참여기업의 선택 폭 확대
    - \* KOTRA : 지사화사업, KOSME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OKTA : 글로벌마케터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외 마케팅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서비스 기관을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운영

### 해외민간네트워크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해외투자,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현지 수행사

- **(지원대상)**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당해연도를 포함 최근 5년 이내 수행사로 선정되었던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기업
- 기타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지원내용)** 기업의 해외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 [ 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안) ]

단계	기간	총 비용 (자부담)	주요 서비스
발 전	1년 이내	900만원 (300~500만원)	[마케팅 및 수출지원] 전시 상담회 참가지원, 물류통관 자문, 출장지원, 인허가취득지원, 브랜드 홍보 등
확 장		2,000만원 (800만원)	[수출 및 현지화 지원] 기술수출(제휴), 해외 투자유치, 조달진출, 품목별 타겟 진출, GVC, 인큐베이팅 서비스 등

\* 해외지사화사업 홈페이지([www.exportboucher.com/jisahwa](http://www.exportboucher.com/jisahwa)) 지사화 모집공고의 KOTRA의 지역별 발전단계 참가비를 준용함

## II. 사업 추진절차

### □ 단계별 추진절차

#### 1. 발전단계

<b>1 컨설팅 계약체결</b> (참여기업, 민간네트워크)	① 1:1 컨설팅 계약체결 ② 계약서 등 제반서류 송부 (해외민간네트워크 ⇨ 중진공)	선정결과 통보일 +2주
<b>2 최종 계약승인</b> (중진공)	③ 계약서 검토 후 최종 계약승인	계약체결일 +2주
<b>3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보조금 신청</b> (참여기업)	④ 기업부담금(착수금) 납부(총 부담금의 50%) (참여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⑤ 정부보조금 신청 (참여기업 ⇨ 중진공)	최종 계약승인일 +2주
<b>4 정부보조금 지급</b> (중진공)	⑥ 국고 보조금 지급 (중진공 지역본(지)부 ⇨ 해외민간네트워크)	보조금 신청일 +1개월
<b>5 컨설팅 서비스 개시</b> (민간네트워크, 참여기업)	⑦ 발전단계 컨설팅 서비스 개시 ⑧ 매월 월간보고서 제출 ⑨ 중간 용역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보고서 검수 및 중간점검 ⑩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검수 ⇨ 기업부담금 잔금(50%) 지급 ⇨ 정부보조금 신청 - (중진공) 최종용역비(정부보조금) 지급	각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 +1년 (2차 : 3/1, 3차 : 5/1, 4차 : 7/1)
<b>6 성과관리</b> (중진공)	⑪ 용역수행 결과 평가 - 만족도 조사 및 수행실적 평가 - 해외민간네트워크 재지정 평가시 반영	컨설팅 서비스 종료일 +2개월

\* 각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름  
 \*\* 각 단계별 확정일정은 중진공 담당자가 별도 통지

## 2. 확장단계

<p><b>1 컨설팅 계약체결</b> (참여기업, 민간네트워크)</p>	<p>② 1:1 컨설팅 계약체결 ③ 계약서 등 제반서류 송부 (해외민간네트워크 ⇨ 중진공)</p>	<p>선정결과 통보일 +1개월</p>
<p><b>2 최종 계약승인</b> (중진공)</p>	<p>④ 계약서 검토 후 최종 계약승인</p>	<p>계약체결일 +2주</p>
<p><b>3 기업부담금 납부 및 정부보조금 신청</b> (참여기업)</p>	<p>⑤ 기업부담금 납부(총 부담금의 40%) (참여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⑥ 정부보조금 신청 (참여기업 ⇨ 중진공)</p>	<p>최종 계약승인일 +2주</p>
<p><b>4 정부보조금 지급</b> (중진공)</p>	<p>⑦ 국고 보조금 지급 (중진공 지역본(지)부 ⇨ 해외민간네트워크)</p>	<p>보조금 신청일 +1개월</p>
<p><b>5 컨설팅 서비스 개시</b> (민간네트워크, 참여기업)</p>	<p>⑧ 확장단계 컨설팅 서비스 개시 ⑨ 매월 월간보고서 제출 ⑩ 중간 용역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중간보고서 검수 ⇨ 기업부담금 지급(40%) ⇨ 정부보조금 신청 ⑪ 최종 용역보고서 제출 - (참여기업) 최종보고서 검수 ⇨ 기업부담금 잔금(20%) 지급 ⇨ 정부보조금 신청 - (중진공) 최종용역비(정부보조금) 지급</p>	<p>각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 +1년 (2차 : 4/1, 3차 : 6/1, 4차 : 8/1)</p>
<p><b>6 성과관리</b> (중진공)</p>	<p>⑫ 용역수행 결과 평가 - 만족도 조사 및 수행실적 평가 - 해외민간네트워크 재지정 평가시 반영</p>	<p>컨설팅 서비스 종료일 +2개월</p>

\* 각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 따름

\*\* 각 단계별 확정일정은 중진공 담당자가 별도 통지

## □ 절차별 세부내용

### ① 컨설팅 계약체결

- (참여기업-민간네트워크 매칭) 중진공 해외거점의 1차 매칭결과를 바탕으로 조정 희망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매칭
- (계약서 작성) 매칭된 참여기업과 민간네트워크간 지원 서비스 범위, 세부내용 등을 확정하여 계약체결 **서식1**
- (계약서 제출) 민간네트워크에서 중진공 글로벌처에 ①계약서 사본, ②컨설팅 추진진도표 **서식2**, ③투입인력 현황 **서식3**, ④컨설팅 계약 체결 보고서 **서식4** 제출

\* ①~④의 서류는 계약 건별 제출 필요

\*\* 제출서류 내 (인)란은 법인인감(개인기업인 경우 개인인감) 날인 해외 소재 민간네트워크의 경우 서명 대체가능

### ② 최종 계약승인

- 중진공 글로벌처\*에서 계약서 검토 후 이메일로 최종 승인통보
- \* 해외지사화사업 민간네트워크 관리 담당자가 참여기업, 민간네트워크에 안내
- \*\* 컨설팅 수행과제/추진진도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등 검토, 부적정 시 반려 처리

### ③ 기업부담금 납부

- (민간네트워크 ⇨ 참여기업) 착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인보이스) 발행
- (참여기업 ⇨ 민간네트워크) 민간네트워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인보이스)를 근거로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송금

[ 컨설팅 용역비 지급기준 ]

프로그램	구 분	총 비용(A)	기업부담금(B)	중진공 지원금(A-B)
발전 (2회분)	착수금	총 비용의 50%	기업부담금의 50%	정부보조금의 50%
	최종용역비	총 비용의 50%	기업부담금의 50%	정부보조금의 50%
확장 (3회분)	착수금	총 비용의 40%	기업부담금의 40%	정부보조금의 40%
	중간용역비	총 비용의 40%	기업부담금의 40%	정부보조금의 40%
	최종용역비	총 비용의 20%	기업부담금의 20%	정부보조금의 20%

\* 총 컨설팅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참여기업이 부담**

\*\* 세금계산서(또는 인보이스)는 참여기업 앞으로 발행 (중진공으로 발행되어서는 안됨)

#### ④ 정부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참여기업 ⇨ 중진공)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 납부 후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

- 보조금 신청 서류

1.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본 **서식6**
2. 세금계산서(또는 인보이스) 사본
3. 기업부담금 및 부가세(해당 시) 송금영수증
4. 정보제공 조회 동의서 사본 **서식7**, 보조금 약정서 사본 **서식5**
5. 만족도 조사서

↳ 4번은 착수, 5번은 중간·최종 보조금 신청 시 **최초 1회만 제출**

#### [ 정부보조금 신청기한 ]

구분	신청 기한	비고
착수금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신청	기업부담금 납부 후 정부보조금 신청가능
중간 용역비	- 중간보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신청	
최종 용역비	- 최종보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신청	

\* 예산 집행을 고려하여 신청 기한 내 진행필요

#### ⑤ 컨설팅 서비스 개시

- (서비스 개시) 해당 단계 및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 부터 1년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민간네트워킹은 해당 사이트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제출(월간, 중간, 최종)

\* 보고서 관리 사이트 : <https://www.kosme-jisahwa-report.or.kr>

#### [ 단계 및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 ]

단계	차수	서비스 개시일	비고
발전	2차	3.1	모집공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차	5.1	
	4차	7.1	
확장	2차	4.1	모집공고에 따른 <b>서비스 개시일은 변경불가</b>
	3차	6.1	
	4차	8.1	

- **(중도해지) 상호 합의** 후 중도해지 검토요청서 **서식8** 에 양사 인감을 날인하여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

\* 개인기업은 대표자 개인인감, 법인기업은 법인인감 사용, 해외소재인 경우 대표자 서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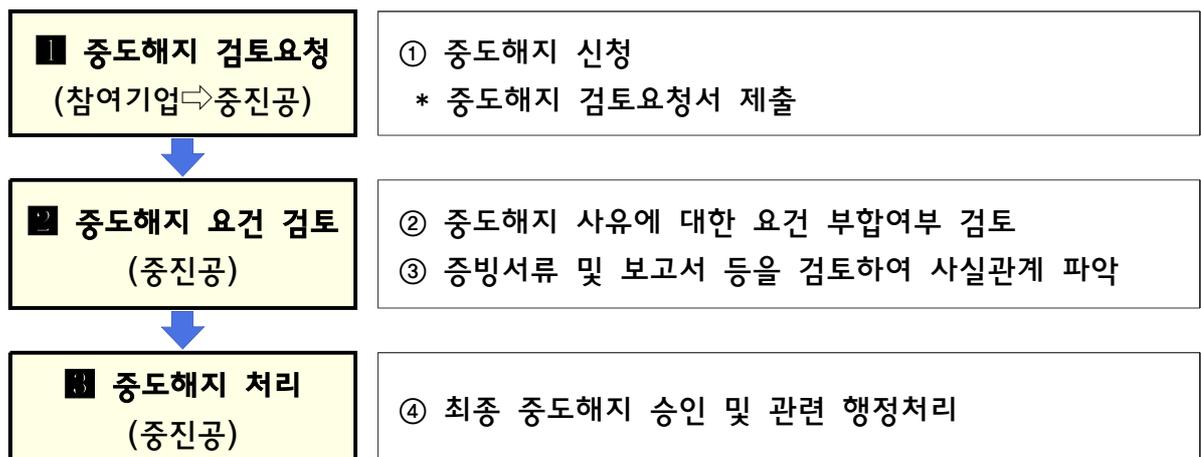
- 중도해지 가능 사유

1. 계약 당사자간 용역수행 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못한 경우
2. 계약서에 의거한 결과물이 미비하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3.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사업비의 변칙 운용 등 진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불성실하게 운용한 경우
5.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운 경우

- 참여기업 및 수행사 일방이 신청가능한 경우

1. 파산, 경매, 압류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 진행절차



- 기업부담금 환급 기준

1. 참여기업이 기지급한 기업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점에 따른 환급기준(월할 기준)에 의거하여 환급 (민간네트워크 ⇨ 참여기업)
2. 단순 서비스 불만족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 신청은 불가하며, 수행기간, 환급금액 등은 양자 간 합의사항임

## ⑥ 성과관리

-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에서 중간, 최종 보조금 신청 시 만족도 조사서(별도 송부) 작성 후 제출
- **(수행실적 평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주요 실적(법인설립, 기술수출 등) 작성 후 제출 (엑셀양식으로 제출요청)

## ⑦ 보조금 부당사용 신고센터

- **(운영 목적)**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당사용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중진공 글로벌처 담당자
- **신고대상**
  - 참여기업이 민간네트워킹에 기업부담금 환부를 요청하는 경우
  - 보조금 부당사용을 위한 컨설팅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민간네트워킹이 컨설팅 용역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신고 건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경고, 보조금 회수, 계약해지 등 조치
  - 부당사용이 확인된 참여기업 및 민간네트워킹에 대해 불이익 부과 \* 필요시 법적조치강구

### ※ 사업 담당자 연락처

업무 구분	메일주소	전화번호
사업 총괄	<a href="mailto:bovely@kosmes.or.kr">bovely@kosmes.or.kr</a>	055-751-9684
민간네트워킹 및 계약관리	<a href="mailto:jiyeon@kosmes.or.kr">jiyeon@kosmes.or.kr</a>	055-751-9680

### Ⅲ. 사업 참여자별 주요내용 (참여기업)

#### □ 의무

- 사업 관련 지침과 본 매뉴얼의 숙지와 준수
  - 해외지사화사업 통합관리지침, 해외민간네트워킹을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해외민간네트워킹 활용 해외지사화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 사업공고 및 협약서에 따른 부담금 부담
- 사업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 주무부처 또는 관리·운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세미나, 행사 등 참석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민간네트워킹 협조 및 부담금 선지급
- 주무부처 또는 관리·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사업 완료 후 설문조사 등 자료제출 요구 등)

#### □ 컨설팅 용역보고서 검수

- 계약이행 여부 및 추진 진도율 등을 직접 검수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간네트워킹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중진공으로 정부보조금 지급 신청

#### [ 컨설팅 용역보고서 제출 ]

구 분	제출 시기	주요 내용
월간 보고서	해당월 말일	- 월별 컨설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중간 보고서	6개월째 당월 말일	- 컨설팅 중간 추진현황 및 결과
최종 보고서	12개월째 당월 말일	- 컨설팅 추진 결과, 성과 및 과제 등

\* 보조금 신청기한 : 보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 특별한 사유 없이 정부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관련 지침에 의거 각종 보조금 사업의 사업 참여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 주의사항

- 타 수출 보조금 지원사업과 진출국가, 지원서비스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이후에 계약기간 중복, 참여제한 사유 발생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중진공은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신청은 계약종료 최소 1개월 이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접수 기준)
- 그 밖에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중진공은 그 사실을 참여기업과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게 통보하고 본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IV. 사업 참여자별 주요내용 (민간네트워크)

### □ 의무

- 사업 관련 지침과 본 매뉴얼의 숙지와 준수
  - 해외지사화사업 통합관리지침,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해외지사화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 서비스 지원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
- 사업수행 성과보고
- 주무부처 또는 관리·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 □ 계약단계별 숙지사항

#### ① 계약체결 전

- 기업 진단 및 전략수립
    - **(기업 요구수준 확인)**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동기 및 목표, 해외 진출 여부 파악
    - **(해외진출 가능성 검토)** 마케팅(브로슈어, 외국어 홈페이지 등 기업 홍보 자료 분석 및 획득)및 기업 역량(기업 규모 및 제품 판매현황, 영업구조, 담당자 현황, 수출실적 등)의 분석
  - 수행과제 적정성 검토
    - 업무수행 시 중요사항은 반드시 참여기업과 협의하고 확인할 것
    -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등은 계약서에 별첨하여 명확히 할 것
    - 서비스 가능범위 내에서 진행 협의에 유의할 것
- \* 계약 성사를 목적으로 실제 수행하기 어려운 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중도해지 및 제재사유임

## ② 계약체결

### ○ 항목별 작성내용

항 목	내 용
지원국가 및 지역	- 참여기업이 선정된 국가, 도시를 기재 * 선정내용과 다른 국가, 도시로 진행불가
컨설팅 내용	- 참여기업이 사업신청 시 제출한 <b>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b> <b>참고1</b> 을 기초로 작성 -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기재하되, 문구 해석의 오해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u>정확한 업무범위, 요구되는 산출물 수준 등을 협의하에 명기</u>
계약개시일	- 계약서 작성 요청일의 다음달 1일 * 발전·확장 계약기간 : 12개월

### ○ 유의사항

-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계약은 참여기업-민간네트워크 양자 간 계약이나, 보조금 신청을 위해 중진공의 승인절차 필요
- 계약 완료시 계약관련 서류를 중진공에 제출하여야 하며 컨설팅 수행과제 적절성, 추진진도 및 투입인력의 적절성 등을 검토 후 승인처리
- 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으며, 보완필요
- 확장단계의 경우 민간네트워크 등급별 계약한도 내에 진행가능

#### [ 확장단계 등급별 계약한도 ]

등급	계약한도	우대조건		등급공개
		공통	개별	
P	최대 12건	중진공 해외진출사업 수행사 자격부여	권역 내 컨설팅 가능	공개가능
A	최대 10건		-	
B	최대 8건		-	-
W	최대 3건		-	-

### ③ 계약승인 후

- 민간네트워킹은 참여기업에게 착수금 전체금액(정부보조금 포함)으로 인보이스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 □ 보고서 작성지침

### ① 보고서 검수

- 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지역본(지)부 담당자가 검수
- 작성기준 미 준수 시 지역본(지)부 담당자는 민간네트워킹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하고 보완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카피킬러 도입으로 보고서간 지나친 중복 발생 시, 지역본(지)부 담당자가 보고서 반려처리 가능

#### [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용역보고서 작성 기준 ]

구 분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제출시기	계약시작일로부터 6개월째 말일	계약종료일 2주 전
최소분량	A4용지 10페이지 (표지, 목차 별도)	A4용지 20페이지 (표지, 목차 별도)
내용구성	(1)추진목표, (2)시장분석, (3)추진전략, (4)세부 추진내용, (5)향후 계획	(1)추진목표, (2)시장분석, (3)추진전략, (4)세부 추진내용, (5)성과 및 향후과제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에 명시된 <b>제출시기, 최소분량, 내용구성 목록(형식)</b>은 필히 준수 ⇒ 미준수 시 보완요청 예정이며, 미보완 시 정부보조금 지급 불가</li> <li>- 표지에 보고서를 작성한 민간네트워킹의 날인, 컨설팅을 수행받은 참여기업의 <b>날인이 반드시 있어야</b>하며, <b>날짜는 양사가 자필로 자서</b></li> <li>- 보고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b>국문(한글)으로 작성</b></li> <li>- 최종 보고서는 계약기간동안 추진한 내용을 총망라한 것으로, 추진 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되,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필수 (예시 : 수출계약서, 인증서 사본, 현지법인등록증 등)</li> <li>- 타 기업 보고서와의 중복, 무단인용, 허위정보 기재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관련지침에 의거 용역비 환수 및 자격박탈 등 필요한 조치 추진</li> </ul>	

## ②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보고서 검수강화

- 보고서 구성의 적정성, 내용의 전문성, 완결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내용 중복, 표절 여부 등을 동시에 검수
  - (검수대상)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 (활용방안) 검수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조치, 평가결과는 민간네트워킹 재지정 평가 시 반영
- \* 용역수행 결과조작 등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가 확인된 경우 관련지침에 의거, 용역비 환수, 자격박탈, 사업참여 제재 등 조치

## □ 보고서별 작성 가이드

### ① 월간보고서 작성

- ◆ 계약체결 후 매일 수행 활동 보고서 제출
  - 해당 월간 실제 업무 수행 내용 간략히 작성
  - 제출시기 : 해당월 말일

- 주요 작성내용
  - (작성 방향) 계약서 내 컨설팅 수행 진도표에 따라
    - ① 프로젝트 및 과제수행 현황 ② 일자별 추진 내용 ③ 업체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내용 ④ 기타 의견 등을 비롯한 세부 활동일지 및 고객 요구사항 처리 등을 내실있게 작성
- 작성지침
  - 보고서는 업무수행의 증빙자료로 월중 활동내용 및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2페이지 이내)
    - \* 고객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
  - 해당 월 말일까지 참여기업에 전달하고 중진공이 지정한 사이트에 업로드
  - 보고서는 제공 양식(한글/워드)을 비롯하여 기타형식을 활용해도 무방

## ② 중간·최종보고서

### ◆ 제출한 컨설팅 진도표에 의거, 수행활동 및 성과 정리

- 컨설팅 추진현황(마케팅 전략, 바이어 발굴, 영업활동 결과), 성과 및 과제(문제점, 성과, 향후과제 등)을 종합 보고
- 제출시기 : (중간) 6개월째 당월 말일, (최종) 계약종료일 2주 전

### ○ 주요 작성내용

- (작성방향) 컨설팅 수행기간 동안의 활동내용 및 성과 등을 종합 정리 하여 보고

#### [ 항목별 주요 작성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지원서비스 개요	참여기업, 지원국가 및 지역, 서비스 유형, 서비스별 추진내용 및 성과요약
세부 추진내용	서비스별 세부 추진현황, 추진전략 및 방법, 활동결과(실적)
향후 추진계획 (중간보고서 해당)	이후 추진과제 및 일정 등
사업성과 및 과제 (결과보고서 해당)	주요 활동성과, 반성점 및 개선점 등

### ○ 작성지침

- 참여기업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작성
- 보고서 내용의 전달력 강화를 위해 사진, 그림자료 등을 활용
- 성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 첨부
  - \* 수출계약서, B/L, 인증서 사본 등
- 최종보고서에는 향후 사후관리 방안, 지원계획 등을 포함 제시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중간 및 최종 보고 단계에서는 가급적 참여기업 대표에게 직접 브리핑 또는 유선 설명

## □ 주의사항

- 해외민간네트워크는 동일한 참여기업과 타수출 보조금 지원사업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예정이라면 본 사업과 진출국가, 지원서비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미 조치 시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이후에 계약기간 중복, 참여제한 사유 발생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지침에 따라, 기업분담금의 집행처리 없이 국고보조금만 집행은 불가합니다.
- 그 밖에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중진공은 그 사실을 사업 참여자와 주무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게 통보하고 본 사업을 포함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서식

## 참고 1

## 단계별 지원가능 서비스

○ 상위 단계 서비스는 하위를 포함하여 지원 가능 (확장>발전>진입)

단계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진입 (6월)	기초 시장조사	수요 및 수요동향 조사, 수출가능성 체크, 경쟁사 및 현지 가격표 조사, 유통 구조, 관련 인증 조사
	잠재바이어 조사	잠재바이어 발굴 후 잠재 바이어리스트 제공, 제공받은 홍보자료를 통하여 기초컨택 및 바이어의견 피드백 ※수출성약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과업을 포함하지 않음
	네트워크 교류	마케터와 참여기업의 네트워크화(친구맺기)를 통한 정보제공,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 지원, 협회 회원네트워크 지원 ※협회 회원이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지 않음
	기초홍보자료 현지어 번역	제품수출을 위한 기초적인 홍보자료 현지화 지원 ※홍보자료(브로셔, 소개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제품관련(패키지·사용설명서 등) 및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시판매(소비재 전용)	수출희망 제품의 샘플 시판매를 통한 현지시장 반응 확인 (소비재에 한하여 선택 가능) ※샘플제반비용(샘플비, 물류비, 반납 시 반납비 등)을 기업이 부담 시 지원 가능
발전 (1년)	수출성약 지원	시장·산업동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수출성약단계까지 필요한 제반사항 지원
	전시·상담회 참가지	전시회 정보제공, 바이어 상담주선, 전시회 참가 관련 행정지원
	물류통관 자문	물류서비스 필요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물류전문기업 소개 등
	출장지원	현지 출장일정 수립, 관심바이어 면담일정 주선, 기타 지원
	기존거래선관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어와의 업무연락 및 비즈니스 F/U 등 지원
	현지유통망 입점	해외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전문 유통채널 진출지원
	인허가 취득 지원	인허가 취득 절차 등 컨설팅 및 현지 전문 등록대행기관 발굴 소개
	브랜드 홍보	현지 홍보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전문기관(에이전시) 소개, 홍보활동 지원
	프로젝트 참가	프로젝트 정보 제공, 협력 파트너 발굴 소개, 벤더등록 등 지원
	IP등록	해외 지적재산권 등록 관련 컨설팅 및 등록 관련 지원(등록비용은 지원 제외)
현지법인 설립지원	법인설립 절차 등 자문 및 현지 변호사·법무법인 등 전문가 소개	
확장 (1년)	기술수출(제휴)	기술수출 및 제휴(기술이전, 협력, 라이선싱 등) 파트너 알선 및 현지 지원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글로벌기업의 상품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위한 제반 지원
	액셀러레이팅 서비스	해외 VC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멘토링 등
	데이터사이언스 컨설팅	UX(사용자경험) 활용 디자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및 ICT 컨설팅(머신러닝, 원격 AS 등) 제공 등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 수출 지원
	조달진출	국제기구 및 국가별 국제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 입찰 대행업무 지원
	품목별 타겟진출	다수의 중소기업(5개사)이 생산하는 산업별 유사 제품을 묶어, 온-오프라인의 채널을 활용한 판매·판로개척 지원
	인큐베이팅 서비스	생산설비 등 중장기적인 기술마케팅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O2O 지원 서비스	현지 컨설팅 전문 법인이 보유한 바이어와 연계한 O2O 방식*의 수출지원 * O2O(Online-to-Offline) : 화상 상담을 통한 바이어 매칭 이후 샘플 등 실물 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쇼케이스관을 통해 전시하고 필요시 바이어에게 샘플(상품) 배송
	현지 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투자타당성 검토, 파트너 발굴, 현지법인 설립지원 등
법률자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A/S, 특허상표권 등록, 전문적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중진공의 경우, 발전 및 확장단계만 수행

## 참고 2

## 단계별 서비스 금액

### ○ 발전단계

- 총 사업비 : 900만원, 기업부담금 : 지역별 차등 (하단 표 참고)

[ 단위 : 만원(VAT 별도) ]

권역	국가	지역(도시)	기업부담금	권역	국가	지역(도시)	기업부담금	
중국 지역	중국	광저우	350	유럽 지역	영국	런던	450	
		난징			벨기에	브뤼셀		
		다롄			독일	베를린	500	
		베이징				프랑크푸르트		
		상하이				뮌헨		
		샤먼				함부르크		
		선양			프랑스	파리	450	
		후룬베이얼			벨기에	브뤼셀	450	
		시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옌지			오스트리아	빈		
		옌타이			스위스	취리히	450	
		우한			스웨덴	스톡홀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	400	
		징저우				바르셀로나		
		창사			덴마크	코펜하겐		
		창춘			이탈리아	밀라노		
		청두(성도)			핀란드	헬싱키	300	
		충칭			그리스	아테네		
		칭다오(청도)			폴란드	바르샤바		
	톈진(천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300			
하얼빈	클루지나포카							
항저우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300					
타이완(대만)								
중국	홍콩	400						
일본 지역	일본	선전	400	불가리아	소피아	500		
		나고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도쿄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오사카		뉴욕	로스앤젤레스			
		지바		시카고	달라스			
중남미 지역	브라질	후쿠오카	350	북미주 지역	미국	뉴저지	450	
		상파울루				워싱턴		
		리우데자네이루				마이애미		
	포르탈레자	버지니아						
	멕시코	파나마				디트로이트		
	칠레	쿠바				애틀랜타		
	산티아고	과테말라				실리콘밸리		
	아순시온	콜롬비아				보고타		시애틀
	파나마	페루				리마		하와이
	아바나	에콰도르				키토		토론토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캐나다	밴쿠버				
중남미 지역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350	동남아 대양주 지역	호주	시드니	500	
						멜버른		
CIS 지역	타지키스탄	두산베	350	베트남		하노이	350	
						조지아		트빌리시
		키르기스스탄				호치민		

권역	국가	지역(도시)	기업부담금	권역	국가	지역(도시)	기업부담금
	러시아	모스크바	300			다낭	400
		상트페테르부르크			필리핀	마닐라	
		블라디보스톡			싱가포르	싱가포르	
		노보시비르스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카자흐스탄	알마티	300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우크라이나	키예프			미얀마	양곤	
	아제르바이잔	바쿠			태국	방콕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캄보디아	프놈펜	
	벨라루스	민스크			라오스	비엔티안	
몽골	울란바토르	뉴질랜드	오클랜드	400			
서남아 지역	인도	뉴델리	350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400
		뭄바이			아부다비		
		벵갈루루			카타르	도하	
		첸나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콜카타			이라크	바그다드	
		하이데라바드			리비아	트리폴리	
	암다바드	튀르키예	이스탄불				
방글라데시	다카	이란	테헤란				
스리랑카	콜롬보	이집트	카이로				
파키스탄	카라치	요르단	암만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시리아	다마스쿠스				
모잠비크	마푸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케냐	나이로비	쿠웨이트	쿠웨이트				
수단	카르툼	알제리	알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모로코	카사블랑카				
탄자니아	다레살람	오만	무스카트				
나이지리아	라고스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가나	아크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 확장단계

- 총 사업비 : 2,000만원, 기업부담금 : 800만원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계약서 (발전단계용)

- 기 업 : 참여 중소기업 명칭 기재
- 수행사 : 해외민간네트워크 명칭 기재

\_\_\_\_\_ (이하“기업”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수행사”이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기업이 요청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의 범위) 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행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컨설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진출국가 및 지역(도시)	선정된 도시만 기재 (변경 불가)
컨설팅 내용	<p>※ 반드시 내용변경하여 기재바랍니다</p> <p>기업이 요청하는 해외진출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며, 별첨 컨설팅 추진 진도표에 세부추진단계 및 결과물을 명시한다.</p> <p>※ 계약내용에 따라 기재.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용역의 정상수행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명시</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및 제품의 시장조사</li> <li>- 해외진출 추진전략 수립</li> <li>- 현지언어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정비</li> <li>- 현지 전문잡지 광고게재 및 현지 홍보매체 활용</li> <li>- 바이어 Target List 제공 및 신용조사</li> <li>- 관심업체 발굴 및 협상대행 등</li> </ul>

제3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조 (컨설팅 비용) ① 기업은 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 9,000,000원(VAT 별도) 중 기업부담금을 수행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나머지는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구분		금액 (단위:원)		지불기한
		용역비		
착수금 (50%)	기업부담금	(	원 x 50%)	운영기관 계약승인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 및 보조금 신청
	정부보조금	(	원 x 50%)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최종 용역비 (50%)	기업부담금	(	원 x 50%)	계약종료 이후 14일 이내 납부 및 보조금 신청
	정부보조금	(	원 x 50%)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총 계			원	

\* VAT 발생 시 기업이 지불

\* 컨설팅 비용 지급비율은 50%-50%로 하며 변경 불가

② 수행사는 별첨의 컨설팅 추진 진도표의 추진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을 기업에게 제출하고, 문서로 기업에게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별첨의 컨설팅 추진 진도표의 추진기간 내에 용역 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기업은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수행사에게 서면으로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④ 기업과 수행사는 본 계약기간 중 수행사의 컨설팅 수행으로 인하여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된 경우 기업이 수행사에게 수출대금(또는 계약체결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기업과 수행사는 본 컨설팅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기업은 본 컨설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사가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사내 전담자를 지정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본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행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 기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행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월간보고서(당월 말일), 중간보고서(6개월째 말일), 최종보고서(계약종료일 2주 전) 등 용역 결과물을 성실히 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수행사의 용역 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 시, 즉시 수행사에 서면으로 보완 요청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수행사는 10일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기업은 수행사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없다.

6. 기업과 수행사는 정부의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납입토록 되어 있는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자체 부담케 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변칙 운용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기업부담금 환급) ① 본 컨설팅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서 시정 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 후 중도해지의 의사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중도해지의 의사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파산, 경매, 압류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아래의 원인으로 인해 기업 또는 수행사 일방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입증책임은 요청 당사자에게 있음

가.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계약 상대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를 제안한 경우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사는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프로젝트 수행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용역비(월할 정산)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환한다. 단,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프로젝트 진행경과, 용역 결과물, 계약 해지의사 통보일 등을 토대로 환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결정에 따른다.

제7조(손해배상)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규정) 본 컨설팅 계약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한 사항과 해외지사화사업의 해당 공고문의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제9조(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고, 그 법령이 없을 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재판관할) 이 계약의 관할은 기업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과 수행사는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기업) 사업 참여 중소기업명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수행사) 해외민간네트워크명

회사명 :

주 소 :

(인) 대표자 : (인)

-[서식 2] 컨설팅 추진 진도표

-[서식 3] 투입인력 현황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계약서 (확장단계용)

- 기 업 : 참여 중소기업 명칭 기재
- 수행사 : 해외민간네트워크 명칭 기재

\_\_\_\_\_ (이하“기업”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수행사”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제휴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협약을 이행하기로 합의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기업이 요청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계약 쌍방의 역할, 책임,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의 범위) ①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수행사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컨설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진출국가 및 지역(도시)	선정된 도시만 기재 (변경 불가)
컨설팅 내용	<p>※ 내용변경하여 기재바랍니다 기업이 요청하는 해외진출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며, 별첨 컨설팅 추진 진도표에 세부추진단계 및 결과물을 명시한다.</p> <p>※ 계약내용에 따라 기재. 추후 분쟁 발생 시 이를 근거로 용역의 정상수행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계약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명시</p>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및 제품의 시장조사</li> <li>- 해외진출 추진전략 수립</li> <li>- 현지언어 홍보물 제작 및 인터넷 사이트 정비</li> <li>- 현지 전문잡지 광고게재 및 현지 홍보매체 활용</li> <li>- 바이어 Target List 제공 및 신용조사</li> <li>- 관심업체 발굴 및 협상대행 등</li> </ul>

제3조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컨설팅 비용) ① 기업은 본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총 비용 \_\_\_\_\_원(VAT 별도) 중 기업부담금을 수행사에게 직접 지급하며, 나머지는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구분		금액 (단위:원)		지불기한
		용역비		
착수금 (40%)	업체분담	원	(총 기업부담금의 40%)	운영기관 계약승인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 및 보조금 신청
	정부지원	원	(총 정부보조금의 40%)	정부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지급
중간용역비 (40%)	업체분담	원	(총 기업부담금의 40%)	계약서 상 사업시작 6개월 이후 시점의 14일 이내 납부 및 보조금 신청
	정부지원	원	(총 정부보조금의 40%)	정부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지급
최종 용역비 (20%)	업체분담	원	(총 기업부담금의 20%)	계약종료 이후 14일 이내 납부 및 보조금 신청
	정부지원	원	(총 정부보조금의 20%)	정부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보조금 지급
총 계		원		

\* VAT 발생 시 기업이 지불

\* 컨설팅 비용 지급 비율은 40%-40%-20%로 하며 변경 불가

② 수행사는 별첨의 컨설팅 추진 진도표의 추진기간 내에 용역 결과물을 기업에게 제출하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각 제출 시 문서로 기업에게 용역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별첨의 컨설팅 추진 진도표의 추진기간 내에 용역 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용역결과물이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기업은 용역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수행사에게 서면으로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 받아야 한다.

④ 기업과 수행사는 본 계약기간 중 수행사의 컨설팅 수행으로 인하여 바이어와 거래가 성사된 경우 기업이 수행사에게 수출대금(또는 계약체결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계약당사자 의무) 기업과 수행사는 본 컨설팅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1. 기업은 본 컨설팅 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사가 요구하는 사업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사내 전담자를 지정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본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수행사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 기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은 계약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수행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월간보고서(당월 말일), 중간보고서(6개월째 말일), 최종보고서(계약종료일 2주 전) 등 용역 결과물을 성실히 기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업은 수행사의 용역 보고서 등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 요청사항이 발생 시, 즉시 수행사에 서면으로 보완 요청사항을 전달해야 하며, 수행사는 10일 이내에 용역 결과물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기업은 수행사에게 보완 요청을 할 수 없다.

6. 기업과 수행사는 정부의 정부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이 납입토록 되어 있는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자체 부담케 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변칙 운용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의 해지 및 기업부담금 환급) ① 본 컨설팅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 위반 상대방에서 시정 통보를 서면으로 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호 합의 후 중도해지의 의사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중도해지의 의사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파산, 경매, 압류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아래의 원인으로 인해 기업 또는 수행사 일방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단, 이 경우 입증책임은 요청 당사자에게 있음

가. 계약 상대자의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나. 계약 상대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거래를 제안한 경우

다. 허위자료 제출 등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거나 계약 상대자에게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사는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프로젝트 수행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용역비(월할 정산)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참여기업에게, 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게 반환한다. 단, 프로젝트 수행기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 서식 2

## 컨설팅 추진 진도표 (작성 예)

### 컨설팅 추진 진도표

\* 아래의 예시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함

#### ◆ 해외진출 유형 1 (예시 : 수출지원)

※작성된 내용은 예시이므로 계약된 컨설팅 계획에 따라 작성 필수

구 분	용역결과물	추진기간	용역대금수령
용역계약체결	용역계약서 (컨설팅 추진진도표, 투입인력프로필 등)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금(40%)
해당제품 시장조사	시장조사 및 전략계획서	계약 후 1개월	-
세부 추진전략 수립			-
업체홍보물 자료제작	현지어 홍보물	계약 후 5개월	-
현지 전문잡지 광고 게재및 현지 홍보매체 활용	광고게재 계약서 및 잡지		-
타깃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신용조사	타깃바이어 리스트		-
타깃바이어 리스트 1차 접촉 및 홍보	중간 용역보고서		중간용역비(40%)
유망전시회 소개 및 현지지원, 전시업체 미팅	마케팅보고서(매월) 전시회 미팅 보고서 타깃바이어 접촉결과	매월 말  (단, 중간/최종보고서 제출월에는 마케팅보고서 생략)	-
시연회, 설명회, 로드쇼			-
관심업체 발굴 및 협상			-
유망 추진업체 선정 및 방문협의 진행			-
샘플송부, 가격협상			-
용역수행 추진결과 분석	최종 용역보고서 고객 클레임 접수 수출 분쟁 자문	계약 후 12개월	-
구체적 계약조건 협의			-
계약서 검토			-
계약체결			-
제품선적			최종용역비(20%)

◆ 해외진출 유형 2 (예시 : 해외투자 지원)

구분	용역결과물	추진기간	용역대금수령
용역계약체결	용역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금(40%)
현지 투자타당성 조사	현지투자 타당성 조사서	계약 후 1개월	-
현지투자 정보제공 전략지역 선정 및 조사	투자/시장 정보 및 전략계획서 타깃파트너 접촉결과 중간용역보고서	계약 후 5개월	-
해당제품 시장조사			-
세부 추진전략 수립			-
현지 합작파트너의 타깃바이어 리스트 제공 및 신용조사			-
타깃파트너 접촉, 협의 및 방문 진행			중간용역비(40%)
현지 법인설립, 설치인증, 투자관련 절차 지원			마케팅 보고서(매월)
법률·세무·회계 자문	-		
투자 예정지 방문지원	-		
현지 지원인력 채용지원	-		
지적재산권 등록 지원	-		
현지법인 인력채용 지원	-		
투자관련 부동산 계약지원	-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원	최종 용역보고서	계약 후 12개월	

**서식 3**

**투입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구분	담당자명	주요 이력사항	비고
주요 업무 기재	성명 기재	- 학력, 주요 경력사항 등에 대해 기재	내/외부 구분
<예시> - 프로젝트 총괄			내부
- 시장조사 담당			외부
- 타깃 바이어 발굴 및 접촉			내부

## 컨설팅계약 체결 보고서

수신 :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 사는 중진공이 추진하는 「해외지사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컨설팅 계약 체결현황 및 입금계좌를 신고합니다.

[ 컨설팅 계약 체결 현황 ]

구분	업체명	지원국가 및 지역	계약금액(VAT 별도)
진입	(주)	미국, 뉴욕	4,000,000
발전	(주)	미국, 시카고	9,000,000
확장	(주)	미국, 시카고	19,000,000

[ 입금계좌 신고 ]

\* 상기 컨설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업체 및 중진공으로부터의 모든 용역대금은 아래의 입금계좌로 송금요청 합니다.

■ 국내소재 네트워크 (\*통장 사본 첨부)

은행(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 해외소재 네트워크 (\*영문으로 기재)

▶ Bank Information

Bank Name	Address	SWIFT CODE

▶ Account Information

Beneficiary Name	Account No.	Address	TEL. NO.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자명 :

(인)

## 보조금 약정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은 「20 년도 해외지사화 사업」의 수행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_\_\_\_\_(이하“기업”이라 한다)과 본 약정을 체결한다.

1. 기업은 수행사(‘해외민간네트워크’)와 위 해외지사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진출 컨설팅 계약(이하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 . . . .자로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2. 기업은 해외지사화 사업에 따른 해외진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를 포함한 컨설팅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중진공은 기업에게 기업부담금의 불법 전용, 리베이트 제안, 보조금 집행 허위보고, 기타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등 본 약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반납(미지급된 보조금은 지급거부를 포함한다), 중진공에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예정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본 약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4. 중진공은 컨설팅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컨설팅 계약서에 의거한 용역 결과물이 미비하여 기업의 정당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컨설팅 계약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수 있다.
5. 컨설팅 계약 이행에 대한 용역비는 기업이 선 지급한 후 중진공에게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진공은 그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라 보조금을 수행사에게 직접 송금할 수 있다.
6.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접수된 컨설팅 보고서 및 기타 조사내용은 명백한 영업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 중소기업의 정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중진공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위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한 중진공의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지사화사업 수행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이 약정의 내용으로 본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중소기업진흥공단

회사명 : 참여기업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충무공동)

주 소 :

대표자 : 이사장 강 석 진 (관인생략) 대표자 :

(인)

## 보조금 지원신청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사업 참여 기업명 :
- 해외민간네트워크명 : 컨설팅회사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지사화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해당 해외민간네트워크의 입금계좌로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단위 : 천원)

총 컨설팅비 (A)	기지급금(B)			잔여 컨설팅비 (A-B)	금회 보조금 신청				
	업체 분담금	정부 보조금	합계		업체부담금	금회 보조금 신청액	부가세 집행액	부가세 지급일	금회 신청액 내역
ex) 20,000	0	0	0	20,000	3,200	4,800			착수
					합계		2,000	24-4-06	중도 최종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첨부 : 세금계산서(또는 Invoice) 사본, 업체분담금 및 부가세 송금확인증(해당기업만)

# 서식 7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참여기업 제출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중진공, 각 운영기관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지사화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금액 등)를 중진공 홈페이지( <a href="http://www.kosmes.or.kr">http://www.kosmes.or.kr</a> )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a href="http://www.mss.go.kr">http://www.mss.go.kr</a> )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해외지사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지사화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무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li> <li>▶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협만)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li>▶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li> </ul>
제공·조회 목적	해외지사화사업 참여를 위한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li> <li>·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li> </ul> </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li> <li>·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li> <li>·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ul> </li> <li>▶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ul>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 ▶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연대보증인</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li> <li>▶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li> </ul>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li>▶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ul>
<p>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해외지사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지사화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ul> </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li> <li>▶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li> </ul>
<p>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해외지사화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 ) -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해외지사화사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해외지사화사업 관련 상담, 참여, 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해외지사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해외지사화, 기업진단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li>▶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li> </ul>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지사화 사업, 기업진단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li> <li>▶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li> </ul>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li> <li>▶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 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ul>
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해외지사화, 중소기업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li> </ul> </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창투회사,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li> <li>·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li> <li>·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ul> </li> <li>▶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li> </ul> </li> </ul>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채무 전액상환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p>제공받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li> <li>▶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등</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li> <li>▶ 연대보증인</li> <li>▶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li> </ul>
<p>제공받는 자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해외지사화사업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연대보증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해외지사화·기업진단·공동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li>▶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 융자취급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li> </ul>
<p>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li> <li>·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li> <li>· 기타 신용정보(해외지사화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li> </ul> </li> <li>▶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li> <li>▶ 중소기업 진단관련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사전부실예방위원회), 한국거래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투자희망기업에 한함),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li> <li>▶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연대보증인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li> </ul>
<p>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p>	<p>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p>
<p>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p>	<p>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p>
<p>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p>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여부</p>	<p>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p>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해외지사화 사업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해외지사화, 기업진단 공동진단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년 월 일

기업체명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이용 사무 (이용목적)	담당자 확인 정보	동의여부 (해당란에 √ 표시)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벤처기업확인증,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건축허가서,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박원부, 선적증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장애인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건축물사용승인서, 토지(임야)대장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진공의 해외지사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해외지사화사업 종료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b>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b>	<b>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b>
----------------------	---

### □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대출보유기관 및 금융회사 <span style="float: right;">※ 거래가 있는 금융회사 등을 모두 적어주세요</span>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해외지사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조회)할 정보의 항목	- 성명, 고유식별정보, 상호명,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등 - 대출, 보증, 담보, 연체 등에 대한 각종 일자, 금액, 종류, 용도, 물건명, 수량, 소유자, 순위, 설정자, 연체여부, 부도여부 등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조회)할 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정보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 등 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권한 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금융회사에 위와 같이 본인의 대출 등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span style="text-align: right;">(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span>

### □ 동意的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중도해지 검토 요청서

- 참여기업명 :
- 해외민간네트워크명 :

1. 다음과 같이 체결한 20 년 해외지사화사업 계약을 중도해지 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20 . . ~ 20 . .	해지일자	20 . .
총 계약금액 (A+B)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분담금(A): 원</li> <li>• 정부보조금(B): 원</li> </ul>	원
사업수행기간	개월	총수행금액	원
		업체 기납부금액	원

2. 중도해지사유 :

[참고] 중도해지 가능 사유

- 참여기업의 해외진출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프로젝트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 대상자 간 용역수행 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못한 경우
- 계약서 및 컨설팅진도표에 의거한 결과물이 미비하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의 변칙 운용 등 필수 협조 및 진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금을 불성실하게 운용한 경우
-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수] 제출자료

- 계약 위반 상대방에게 1회 이상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시정요청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계약해지와 관련된 기타 증빙자료(참여업체 공문, 이메일내역 등)

3.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중도해지를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명 :

대표자 :

20 년 월 일

민간네트워크 명 :

대표자 :

## 2024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발전단계 컨설팅 보고서(업체제출용)

월간보고 ( )  
 중간보고 ( )  
 최종보고 ( )

20 . . .

해외민간네트워크명		(인)
사업참여중소기업명		(인)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주)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발전단계 서비스 유형 (해당 유형에 ✓ 표시, 최대 1~3개 항목 집중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수출성약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input type="checkbox"/> 물류통관 자문	<input type="checkbox"/> 출장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존거래선 관리	<input type="checkbox"/> 현지유통망 입점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홍보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참가	<input type="checkbox"/> IP 등록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설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 (3월) 개별 서비스별 주요 추진내용 (요약)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주요 추진내용
<input type="checkbox"/> (ex. 수출성약 지원)	(건)	%	-
<input type="checkbox"/> (ex. 물류통관 자문)	(건)	%	-
<input type="checkbox"/> (ex. 기존거래선 관리)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인허가 취득 지원)	(건)	%	-
<input type="checkbox"/> (ex. 기타 _____ )	(건)	%	-

## 2. 세부 추진내용

“2. 세부 추진내용“은 양식에 구애 없이 ,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현황, 2)추진방법, 3)활동결과 등을 필수로 포함,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주)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발전단계 서비스 유형 (해당 유형에  표시, 최대 1~3개 항목 집중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수출성약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input type="checkbox"/> 물류통관 자문	<input type="checkbox"/> 출장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존거래선 관리	<input type="checkbox"/> 현지유통망 입점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홍보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참가	<input type="checkbox"/> IP 등록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설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 개별 서비스별 주요 추진내용 및 진도율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주요 추진내용
<input type="checkbox"/> (ex. 수출성약 지원)	(건)	%	-
<input type="checkbox"/> (ex. 물류통관 자문)	(건)	%	-
<input type="checkbox"/> (ex. 기존거래선 관리)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인허가 취득 지원)	(건)	%	-
<input type="checkbox"/> (ex. 기타 _____ )	(건)	%	-

## 2. 세부 추진내용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현황, 2)추진전략 및 방법, 3)활동결과(실적) 포함  
양식에 구매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향후 추진계획

4)향후 추진계획·일정 포함  
양식에 구매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주)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발전단계 서비스 유형 (해당 유형에  표시, 최대 1~3개 항목 집중 지원 가능)

<input type="checkbox"/> 수출성약 지원	<input type="checkbox"/>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input type="checkbox"/> 물류통관 자문	<input type="checkbox"/> 출장지원
<input type="checkbox"/> 기존거래선 관리	<input type="checkbox"/> 현지유통망 입점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취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브랜드 홍보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참가	<input type="checkbox"/> IP 등록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설립 지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input type="checkbox"/> 기타 ( _____ )

○ 개별 서비스별 추진성과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추진실적(성과)
<input type="checkbox"/> (ex. 수출성약 지원)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물류통관 자문)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기존거래선 관리)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인허가 취득 지원)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기타 _____ )	(건)	%	- -

## 2. 세부 추진내용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목표, 2)추진체계(전략 및 방법), 3)추진현황, 4)추진결과 등을 포함,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 - 시장분석 및 마케팅전략(4P, SWOT, STP 등 분석틀 활용)
- 현지 마케팅 tool (브로슈어, 홈페이지, 홍보물 등 제작현황, 광고 게재 또는 Press release 등)
  - 타겟 바이어 발굴
  - 타겟 바이어에 대한 영업활동 결과 등

## 3. 사업성과 및 과제

1)사업성과(계량실적 구체적으로 표시), 2)추진시 문제점 및 대응결과, 3)향후 과제 등을 포함,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추진일정
- 타겟바이어별 영업현황 log
  - 활동사진, 상대표 등

# 2023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확장단계 컨설팅 보고서(업체제출용)

월간보고 ( )

중간보고 ( )

최종보고 ( )

20 . . .

해외민간네트워크명	(인)
사업참여중소기업명	(인)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주)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확장단계 서비스 유형 (지원서비스 유형을 자유롭게 명시, 서비스 유형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input type="checkbox"/> ex.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x.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input type="checkbox"/> ex. 법률자문 등

○ (4월) 개별 서비스별 주요 추진내용 (요약)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주요 추진내용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건)	%	-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건)	%	-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건)	%	-

## 2. 세부 추진내용

“2. 세부 추진내용“은 양식에 구애 없이 ,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현황, 2)추진방법, 3)활동결과 등을 필수로 포함,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주)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확장단계 서비스 유형 (지원서비스 유형을 자유롭게 명시, 서비스 유형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input type="checkbox"/> ex.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x.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input type="checkbox"/> ex. 법률자문 등

○ 개별 서비스별 주요 추진내용 및 진도율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주요 추진내용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건)	%	-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건)	%	-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	(건)	%	-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건)	%	-

## 2. 세부 추진내용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현황, 2)추진전략 및 방법, 3)활동결과(실적) 포함  
양식에 구매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향후 추진계획

4)향후 추진계획·일정 포함  
양식에 구매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지원서비스 개요

- 사업참여 중소기업 : **ex) ㈜중소기업**
- 지원 국가 및 지역 : **ex) 미국 (뉴욕)**
- 확장단계 서비스 유형 (지원서비스 유형을 자유롭게 명시, 서비스 유형 제한없음)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input type="checkbox"/> ex.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지원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ex. 현지 투자지원(법인설립)	<input type="checkbox"/> ex. 법률자문 등

- 개별 서비스별 추진성과

서비스 구분	목표	진행율	추진성과(실적)
<input type="checkbox"/> (ex. 기술수출(제휴))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품목별 타겟진출)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인큐베이팅 서비스)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조달진출 )	(건)	%	- -
<input type="checkbox"/> (ex. 해외 투자유치)	(건)	%	- -

## 2. 세부 추진내용

1)개별 서비스별 세부 추진목표, 2)추진체계(전략 및 방법), 3)추진현황, 4)추진결과 등을 포함,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 - 시장분석 및 마케팅전략(4P, SWOT, STP 등 분석틀 활용)
- 현지 마케팅 tool (브로슈어, 홈페이지, 홍보물 등 제작현황, 광고 게재 또는 Press release 등)
  - 타겟 바이어 발굴
  - 타겟 바이어에 대한 영업활동 결과 등

## 3. 사업성과 및 과제

1)사업성과(계량실적 구체적으로 표시), 2)추진시 문제점 및 대응결과, 3)향후 과제 등을 포함,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추진일정
- 타겟바이어별 영업현황 log
  - 활동사진, 상대표 등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용역 보고서 검수표

프로젝트 개요

사업연도	참여기업명	단계	국가(지역)	총 계약금액	수행사명

\* (참고) 확장단계는 국가, 발전단계는 국가(도시명) 기재

용역 보고서 유형(√체크) :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보고서 검수 (확인란에 √체크)

검수항목	항 목 별 내 용	확 인	
(1) 구성의 적정성	추진목표, 시장분석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 등 보고서 구성이 중간/최종 보고 단계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었음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input type="checkbox"/>
(2) 내용의 충실도	추진목표에 맞게, 시장분석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 내용,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 등 보고서 내용이 중간/최종 보고 단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음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input type="checkbox"/>
(3) 보고서 완성도	전체적인 보고서 분량이 중간/최종 보고 단계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작성되었음 * (참고) 보고서 최소 분량 : 중간보고서 10pg, 최종보고서 20pg	적격 <input type="checkbox"/>	부적격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해외지사화사업 용역 보고서를 검수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 수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해외지사화사업 컨설팅 용역 보고서 평가표

일 자 :  
 평가업체 :  
 평 가 자 : (인)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소계
			①	②	③	④	⑤	
(1) 보고서 구성	추진목표, 시장분석, 추진전략, 세부 추진 내용, 성과 및 향후 계획·과제 등 보고서 구성의 적정성	30	30		15		0	
(2) 보고서 내용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및 전문성	30	30	20	10	5	0	
(3) 보고서 완성도	보고서 분량, 구성,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보고서의 완성도	40	40	30	20	10	0	
(4) 용역수행결과 조작 및 허위정보 제공 여부	타기업 보고서와의 중복, 무단인용, 허위 정보 기재 등으로 용역수행결과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사항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b>총 점</b>								